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세입예산

-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최종 예산(6억 2천 1백만원)대비 4.5% 증액된
 6억 4천 8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620,700	648,448	27,748	4.5
세외수입	22,137	23,870	1,733	7.8
경상적세외수입	3,787	6,538	2,751	72.6
재산임대수입	3,359	6,066	2,707	80.6
이자수입	428	472	44	10.3
임시적세외수입	18,350	17,332	△1,018	△5.5
기타수입	18,350	17,332	△1,018	△5.5
보조금	598,563	624,578	26,015	4.3
국고보조금등	598,563	624,578	26,015	4.3
국고보조금등	598,563	624,578	26,015	4.3

※ 장 관 향으로 작성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산출기초
계	620,700	648,448	27,748	4.5	
경상적세외수입	3,787	6,538	2,751	72.6	
재산임대수입	3,359	6,066	2,707	80.6	
공유재산임대료	3,359	6,066	2,707	80.6	
이자수입	428	472	44	10.3	
기타이자수입	428	472	44	10.3	
임시적세외수입	18,350	17,332	△1,018	△5.5	
기타수입	18,350	17,332	△1,018	△5.5	
시·도비반환금수입	18,350	17,332	△1,018	△5.5	
국고보조금등	598,563	624,578	26,015	4.3	
국고보조금등	598,563	624,578	26,015	4.3	
국고보조금	598,563	624,578	26,015	4.3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68억 3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9억 1천 3백만원 대비 **73.9%** 증액된 수준이며, 2018년도 간주처리를 감안한 최종예산 39억 1천 9백만원 대비 **73.6%**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	
총 계	3,913,215	6,803,464	2,890,249	73.9	
행정관리	소 계	3,913,215	6,803,464	2,890,249	73.9
	행정운영경비	156,307	157,731	1,424	0.9
	재무활동	300	70	△230	△76.7
	사업비	3,756,608	6,645,663	2,889,055	76.9
교 부 금	0	0	0	0	

○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913,215	3,919,715	6,803,464	2,890,249	73.9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3,756,608	3,763,108	6,645,663	2,889,055	76.9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544,954	530,954	366,121	△178,833	△32.8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305,834	291,834	293,873	△11,961	△3.9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239,120	239,120	72,248	△166,872	△69.8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4,450	4,450	36,665	32,215	723.9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4,450	4,450	36,665	32,215	723.9
완벽한 통합방위대세 확립	754,680	754,680	726,680	△28,000	△3.7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21,480	121,480	93,480	△28,000	△23.0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350,000	0	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63,200	63,200	0	0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20,000	220,000	220,000	0	0
사회복무요원 관리	703,506	703,506	669,067	△34,439	△4.9
사회복무요원 관리	703,506	703,506	669,067	△34,439	△4.9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144,283	1,164,783	4,221,136	3,076,853	268.9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0	6,500	0	0	0
민방위교육운영비	667,037	667,037	647,120	△19,917	△3.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30,875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6,810	126,810	121,410	△5,400	△4.3
민방위교육장 운영	169,561	183,561	171,731	2,170	1.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50,000	0	0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100,000	100,000	3,200,000	3,100,000	3,100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604,735	604,735	625,994	21,259	3.5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38,260	38,260	37,406	△854	△2.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66,475	566,475	588,588	22,113	3.9
행정운영경비	156,307	156,307	157,731	1,424	0.9
기본경비	156,307	156,307	157,731	1,424	0.9
재무활동	300	300	70	△230	△76.7
보존지출(반환금및기타)	300	300	70	△230	△76.7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세외수입

201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사·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2천 2백만원) 대비 7.8%(1백 7십만원) 증액된 2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25.2㎡) 대부료 수입으로, 전년(336만원) 대비 80.6%(271만원) 증액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일반경쟁 낙찰(2018년 2월, 1천 8백 2십만원, 3년)에 따른 대부료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입찰 후 2차년도 예산¹⁾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다만, 본 '공유재산임대료'는 3년 주기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최고입찰가 (1,820만원)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고, 사업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예산 편성액이 2018년에 비하여 80.6%(271만원) 증가한 이유는, 2018년도에 낙찰 예정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액을 이전 규모에 맞춰 전래답습적으로 편성한 결과라 할 것인바, 적정한 예산 편성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입찰조서

출력일시: 2018년 02월 23일 14시 48분 24초

기관명 : 서울특별시

공고명	서울 성북구 화랑로 378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공고번호	201802-04981-00
입찰번호	0001	기관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73호
물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동 378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근린생활시설	물건관리번호	2018-0200-004272
담당부점	서울특별시	경쟁방식/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
최저입찰가	10,431,720 원 [공개]	참가수수료	0 원
보증금 등록계좌	1006901286640 (우리)	참가수수료 등록계좌	(우리)
입찰등록수수료	면제	낙찰수수료 *1)	108,000 원
입찰기간	2018-02-08 18:00 ~ 2018-02-14 16:00	개찰일시	2018-02-23 10:00
입회검사역	고경미 (인)	집행책임자	고경미 (인)
		입찰결과	낙찰

(단위: 원)

번호	입찰자 구분	입찰자 (대리인)	입찰자 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입찰금액	납부 보증금	보증금 상태	참가 수수료	입찰서 제출일시	낙찰여부	납부방법 *2)
				사업자등록번호								
1	개인	김	본인입찰			18,200,000	910,000	이체계좌오류	0	2018-02-14 14:08:10	낙찰	현금
2	개인	박	본인입찰			12,500,000	625,000	환불완료	0	2018-02-14 15:31:50	유찰	현금
3	개인	오	본인입찰			11,829,902	591,496	환불완료	0	2018-02-13 17:46:53	유찰	현금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2018년 전망액〉 (단위: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전망액)	2019년
예산액	1,725	3,084	3,063	3,359	6,066
징수(전망)액	3,084	3,084	3,062	6,067(180.6%)	-

■ 기타이자 수입

- ‘기타이자 수입’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사업을 위하여 2018년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써 보조금 잔액과 함께 회수하는 세입으로,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전년(43만원) 대비 10.2% 증액된 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비상기획관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처리 해오다가, 2017년부터 ‘그외수입’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8년부터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고 있음.
- 2019년 ‘기타이자수입’ 세입추계 과정을 보면,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47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이자수입 내역에서 2017년도분 계상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2019년 ‘기타수입이자’ 세입추계액 : 472천원

- 1,414,720원 ÷ 3년 = 471,573원

- 최근 3년간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예산액)
이자수입	1,415	508	225	682	472

〈최근 3년간 실제 ‘기타이자수입’ 계상액 및 2018년 전망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망액)
징수(전망)액	229	-	973	387

※ 2017년 징수액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국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415천원)을 포함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관련 반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입 세출외 현금’ 예치 또는 ‘반환금 및 기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2017회계연도 기타이자수입 내역〉 (단위 : 원)

반 납 내 역	징수액	비 고
계	973,490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이자 반납	191,160	국비
2015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이자 반납	213,180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이자 반납	224,300	국비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이자 반납	262,140	
2017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예금이자 반납	26,160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비 이자 반납	56,55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기타이자수입’의 실제 계상액과 세입추계 시 실적 적용액이 불일치하여 적정한 세입 규모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2)의 세입예산의 성질에 따른 구분에 합당한 세입의 처리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추계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도비 반환금수입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최근 5년 평균 반환률(2.3%)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1백 2만원) 감액된 1천 73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시비반환금수입 현황 및 2018년 전망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예정)	2019년
예산액	8,345	10,367	10,369	18,350	17,332
징수(전망)액	20,280	15,228	19,706	9,302	-
수납률(%)	243.0	146.9	190.0	50.7	-

※ 시비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2018년의 경우 50.7%의 저조한 반환이 예상되는바,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구의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그외수입

- ‘그외수입’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 예산과목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세입예산을 편상하지 않았으나, 매년 꾸준히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8년에도 4건(5백 7십만원)의 ‘그외수입’이 발생하였는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2019년 세입예산을 편상하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최근 3년간 그외수입 및 2018년 전망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예정)	2019년
예산액	-	-	1,677	-	-
징수(전망)액	28,273	2,697	33	5,709	-

※ 2018년 ‘그외수입’ 계상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발생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건 (3백 4십 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사용한 국비보조금의 반환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후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임의 반납 후 7년이 지난 후에 비상기획관 세입으로 처리한 것은 세입예산 과목과 실제 수납과목이 상이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³⁾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최근 3년간 '그외수입'(잡수입) 세부내역>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과세일자	수납액	과세내역	비고
1	2016	000209	01-12	24,740	2015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납	
2	2016	002756	04-25	282,140	2015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이자 및연체료	
3	2016	004073	08-08	461,140	461,140 = 449,430(전기요금) + 11,710(상하수도요금)	
4	2016	004481	10-04	35,330	2015회계년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5	2016	004482	10-04	4,790	2015회계년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6	2016	004483	10-04	1,540	2015회계년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7	2016	004484	10-04	14,280	2015회계년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8	2016	004595	10-24	1,734,000	2015년도 연봉채정 계산착오로 차액 반납	
9	2016	005082	12-12	42,80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10	2016	005231	12-20	101,35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하반기 추가)	
11	2017	000099	01-10	33,000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12	2018	000066	01-09	70,00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13	2018	000067	01-09	3,313,360	국비(2011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14	2018	000068	01-09	70,000	국비(2011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15	2018	000264	02-01	2,255,310	'17년 예비군육성지원	

■ **지난연도 수입 미편성**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 4)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에는 미편성하였음.
- 비징수관의 ‘지난연도수입’은 기존에 재무국(세무과)에서 일괄 결산함에 따라 부서별 결산서에 ‘지난연도수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세입결산서의 연도별 연속성 부재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는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 부서의 ‘지난연도수입’을 각 소관부서에서 결산하도록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방침5)을 시행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6)에서는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4)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 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5)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16.8.18.)

6)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 비상기획관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제281회 정례회에서도, ‘지난연도수입’을 세입과목에 편성하도록 주문 하였음에도, 2019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징수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의 미수납액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8	620,700	620,028 (연말추정액)	618,367 (10월말현재)	1,661	99.7
2017	639,086	650,540	647,752	2,788	99.5
2016	640,928	651,739	648,486	3,253	99.5
2015	598,682	622,273	616,150	6,123	99.0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전년(5억 9천8백만원) 대비 4.3%(2천 8백만원) 증액된 6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3천 2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3억 7백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1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2억 7천 2백만원)’ 등으로, 전년(5억 9천 9백만원) 대비 4.3%(2천 6백만원) 증액된 6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18년 (총액)	2019년 (총액)	증 감 (총액)
합 계			598,563 (1,275,337)	624,578 (1,303,248)	26,015 (27,911)
국 고 보조금	행 정 안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0 (4,450)	31,500 (36,665)	31,500 (32,215)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6,500 (6,500)	0 (0)	△6,500 (△6,500)
		민방위교육운영비	316,363 (667,037)	307,172 (647,120)	△9,191 (△19,917)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61,450 (566,475)	271,656 (588,588)	10,206 (22,113)

- ※ 주요 증액 내역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2천 8백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총무훈련(2018년 실시)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32백만원)이 별도 지원되었음.
 -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는 행정안전부 가내시 미배정으로 전액 미편성.
 - ※ ‘민방위교육운영비’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 감액.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 증액.
-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 위임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정한 국비 보조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상기획관은 국가사업에 지나치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⁷⁾’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세수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39억 1천 3백만원) 대비 73.9%(28억 9천만원, 간주처리 포함 최종예산 대비 73.6%(28억 8천 3백만원)) 증액된 68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액 사업은 서남권 민방위 교육장 건립 지원으로 “안전교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31억원(3,100% 증),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에 3천2백만원(723.9% 증) 등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1천2백만원 (69.8% 감) 등임.

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에 따른 국지 도발 대응연습과 전시전환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안보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1천 2백만원) 감액된 2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을지훈련 준비 및 실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x-) 305,834	(x-) 305,834	(x-) 293,873	(x-) △11,961	(x-) △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6,700	(x-) 6,700	(x-) 6,859	(x-) 159	(x-) 2
사무관리비	(x-) 225,671	(x-) 225,671	(x-) 215,351	(x-) △10,320	(x-) △4
공공운영비	(x-) 46,763	(x-) 46,763	(x-) 46,763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300	(x-) 3,300	(x-) 3,3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23,400	(x-) 23,400	(x-) 21,600	(x-) △1,800	(x-) △7

- 2018년도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방침⁸⁾에 따라 잠정 유예 및 축소 운영되어, 예산을 전용(△1천 4백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2억 9천 2백만원) 대비 60.6%(1억 7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2019년 훈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7%(2백만원) 감액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예산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지방자치법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민방위 관련 행사추진,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보급, 화생방 장비 확충, 민방위 교육 강사 선발 및 비상대비 업무분야 자치구 평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5백만원) 감액된 1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8)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9)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26,810	(x-) 126,810	(x-) 121,410	(x-) △5,400	(x-) △4
사무관리비	(x-) 77,310	(x-) 77,310	(x-) 80,310	(x-) 3,000	(x-)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8,100	(x-) 0	(x-) 0
행사실비보상금	(x-) 11,400	(x-) 11,400	(x-) 3,000	(x-) △8,400	(x-) △7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 그 중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사업은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도까지 ‘포상금(1천 5백만원)’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 그러나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8년도부터 편성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증액하였으나, 당초의 인센티브로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업 평가 보고서(2018.1.15.)에 따르면 편성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정산 및 결산절차 등의 업무증가가 예상되는바, 오히려 자치구에서 참여를 회피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는바,

그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에 자치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당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20,000	(x-) 220,000	(x-) 220,000	(x-) 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220,000	(x-) 220,000	(x-) 220,000	(x-) 0	(x-) 0

- 한편,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사랑 안보포럼’(예산 2천만원)의 경우, 토론자가 재향군인회 위주로 구성되어 매번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등은 신청자 모집시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재향군인회 자치구 지회별로 관내 초중고교를 순회하여 모집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의 검토와 함께,
- 사업의 경쟁구도 도입을 통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보다 다양하게 선정·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식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강서구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억원(설계용역비)에 이어 2019년에는 32억원(전액 시비)의 건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00,000	(x-) 100,000	(x-) 3,200,000	(x-) 3,100,000	(x-) 3,1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100,000	(x-) 100,000	(x-) 3,200,000	(x-) 3,100,000	(x-) 3,1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 목 포함)	비고
400	자본지출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서남권 안전센터 건립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 위 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강서구 공유재산)
- 부지면적: 면적 6,910㎡ (발산근린공원 17,825㎡ 중 6,910㎡)
- 건립규모: 지상2층, 건축면적 1,100㎡, 연면적 2,200㎡
- 사업내용: 안전교육을 위한 6개 체험존 및 10개 이상 체험실
- 총 사업비 : 200억원(국비 70억원, 시비 65억원, 구비 65억원)

○ 비상기획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⁰⁾」에 따라 강서구에 안전체험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예산(시비 총 6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나, 민방위 교육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시립시설 활용 정도에 비해 민방위 교육장으로서 활용이 제한되는바, 교육부의 공모를 통한 강서구립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비상기획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외 시립 민방위 교육장 시설 없음.

<민방위 교육장 및 안전교육센터 현황>

구 분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운영주체	市 (비상기획관)	강서구
주용도	민방위교육이 위주(75%), 잔여시간에 학생 안전교육 시행 중	민방위교육 : 학생안전교육(50:50)
이용기관	-민방위교육 :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학생 안전교육 : 인근 지역 학생	-민방위교육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계획안) -학생 안전교육 :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생
이용인원	-민방위대원 : 약 30,000명('17년 기준) ※ 1회 교육 시 4시간 진행 -학생 : 약 10,000명('17년 기준) ※ 1회 교육 시 약 2시간 진행	-민방위대원 : 70,000명(예정) -학생 : 70,000명(예정)
시설현황	광진구 민방위 교육장 (광진구 운영, 광진구민방위대원 교육장 전용)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재난본부 운영, 시민·학생 대상 안전 체험장 전용)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에 대하여 반대급부없이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안전교육 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장 용도로 50%를 활용토록 한 것이, 보조금 교부에 대한 자치구의 반대급부 부담을 강제한 것은 아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마.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사업은 「병역법¹¹⁾」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사업소 포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관리 및 복무자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천 4백만원) 감액된 6억 6천 9백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1) 병역법 제26조(사회복지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지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지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복지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03,506	(x-) 703,506	(x-) 669,067	(x-) △34,439	(x-) △4
사무관리비	(x-) 5,651	(x-) 5,651	(x-) 5,651	(x-) 0	(x-) 0
공공운영비	(x-) 6,300	(x-) 6,300	(x-) 6,720	(x-) 420	(x-)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900	(x-) 900	(x-) 900	(x-) 0	(x-) 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x-) 690,655	(x-) 690,655	(x-) 655,796	(x-) △34,859	(x-) △5

○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봉급, 식비, 교통비 등)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관리는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라 할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으로 진척이 없고, 「지방자치법¹²⁾」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국고보조를 통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중(의안번호: 2010006(2017.11.3.)) 이철희의원 등 12인

12)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시·사업보 사회복지무요원 현황>

(단위:명)

기 관 명	2018년도	복 무 분 야	기 타
합 계	546		
민 방 위 담 당 관	8	일반행정지원 (101)	서울시예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동부도로사업소	12		
남부도로사업소	10		
북부도로사업소	13		
서부도로사업소	6		
성동도로사업소	6		
강서도로사업소	10		
보건환경연구원	15		
서울역사박물관	1		
한성백제박물관	2		
서울도서관	2		
서울시립대학교	13		
중앙물재생센터	23	행정기관경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후대기과	14	환경보호감시	환경부 국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7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8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1		
서울물연구원	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2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1		
한강사업본부	40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
어린이병원	3		
은평병원	31		
서북병원	20		
소방재난본부	114	재난안전관리	행정안전부 국비

※ 시·사업소 근무 사회복지무요원 546명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중 95명 보상금 서울시예산 편성

바.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은 서울시 통합방위사태시 국가방위 요소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효과적인 통합작전, 안보정책 제언 및 안보 현안 자문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2천 8백만원) 감액된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21,480	(x-) 121,480	(x-) 93,480	(x-) Δ28,000	(x-) Δ23
사무관리비	(x-) 93,030	(x-) 93,030	(x-) 55,030	(x-) Δ38,000	(x-) Δ40
국외업무여비	(x-) 15,000	(x-) 15,000	(x-) 25,000	(x-) 10,000	(x-) 6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3,450	(x-) 13,450	(x-) 13,450	(x-) 0	(x-) 0

- 이 중 ‘사무관리비’ 내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보면, 자문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자료검토 수당, 워크숍, 안보정책 개발 용역 등의 비용으로 2018년에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예산에는 안보정책 정책개발 용역비(3천만원)를 전액 감액한 반면, 산출기초별 금액 조정을 통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비’를 설치하여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계목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를 670만원 편성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도 없고 별다른 실적도 없는 것으로 지적된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제정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

<민방위 교육장 및 안전교육센터 현황>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63,0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33,000천원
	- 참석수당 100,000원*20명*10회 = 20,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6명*10회 = 24,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20명*4회 = 8,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4명*10회 = 4,0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정책개발 워크숍 3,500,000원 = 3,500천원
	-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용역) 30,000,000원 = 30,000천원	- 위원회 회의 운영 1,500,000원 = 1,500천원
	증감사유	
	통합방위작전 직원 감액,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비 감액	
국외업무여비	○ 국외 출장여비 15,000,000원 = 15,000천원	○ 국외 출장여비 25,000,000원 = 2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 = 13,450천원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 = 13,450천원
	- 연말군부대 등 위문 3,000,000원*1회*90% = 2,700천원	- 연말군부대 등 위문 3,000,000원*1회*90% = 2,700천원
	-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업무추진 500,000원*7회*90% = 3,150천원	-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업무 500,000원*7회*90% = 3,150천원
	-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1,000,000원*1회*90% = 900천원	-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1,000,000원*1회*90% = 9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6,700,000원 = 6,700천원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6,700,000원 = 6,700천원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